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84호 2019. 2. 15.(금)

선	기관의 장
람	

- 【조 례】
- 【규 칙】
- 【훈 령】
- 【예 규】
- 【공 고】

제2019-241호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3
제2019-244호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제2019-255호 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20
제2019-262호 공인 폐기 및 신조 공고	24
제2019-265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5
제2019-27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30

(수도공급설비: 신풍배수지 신설)

제2019-282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3
제2019-305호 공주시 발전사업유치활동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9

【고 시】

제2019-21호 도로명 주소 부여 고시	54
제2019-22호 도로명 주소 변경 고시	56
제2019-23호 도로명 주소 폐지 고시	58
제2019-2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61
제2019-30호 도시계획시설(골프장)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68
제2019-31호 공주 도시관리계획(대로2-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96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시민소통담당관실 ☎ 041-840-2052)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지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 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 내용 등을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정기발행 또는 수시 발행되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발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보급(배부)은 공주시 본청 모든 부서 및 산하 행정기관과 공주시 의회에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급(배부)됩니다.

상기 보급대상기관은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일반인의 열람 요청 시 게재내용을 열람시키거나 출력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 2019 - 241호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규제 심사대상으로, 규제영향 분석서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 주민이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질함양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안 제17조의 제2항 1호부터 2호까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교육 이수 조항 신설

- (안 제24조의 제5항)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특성화사업 및 공모사업 지원 근거 명시
- (안 제33조) 우수 주민자치센터 포상 근거 조항 신설

3. 입법예고 기간 : 2019. 2. 15. ~ 2019. 3. 8.(21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주민공동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주민공동체과(자치분권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589 / FAX : 041-840-233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공주시 주민공동체과 자치분권팀 (☎ 041-840-8589)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32552)

ㄴ FAX : 041-840-2338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를 “위촉하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람”을 “사람 중 시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후보자”를 “후보자 중 시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24조제5호 중 “사항”을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및 공모 사업”으로 한다.

제33조를 제34조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포상)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자치센터를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고,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출된
후보자

③ ~ ⑦ (생략)

제24조(지원) 시장은 자치센터 활성화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6. (생략)

<신설>

제33조 (생략)

제34조 (생략)

중 시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 후보자 중 시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지원) -----

-----.

1. ~ 4. (현행과 같음)

5. -----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및 공모 사업

6. (현행과 같음)

제33조(포상)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자치센터를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고,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

제34조 (현행 제33조와 같음)

제35조 (현행 제34조와 같음)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신설 필요성

-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기능이 강화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주민교육 강화의 필요성 제기

나.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전 이행사항으로 시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함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상시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마련 및 예산지원

다.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교육에 대한 비용은 공주시에서 수시로 제공하도록 하여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음.

라.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내용에 대하여 인정

마. 규제집행의 적정성

- 행정기구·인력은 기존의 행정력을 활용하지만 교육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수반하여 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 민원사무 구비서류·서류절차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공주시 공고 제 2019 - 244호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제안이유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장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수립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정보화위원회 운영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 다른 법령(「전자정부법」 및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정보공동 이용 등의 중복사항을 삭제하여 법체계 확립과 행정업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지 않은 기본계획 수립 규정 삭제(안 제4조)

- 국가 및 충청도와 연계한 시행계획 수립의 명료화(안 제5조제2항)
- 정보화위원회 폐지와 심의·조정 등의 기능 삭제(안 제6조, 제7조)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행정정보의 제공 등 다른 법령에 위임된 조항 삭제

- ❖ 안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 전자정부법 제8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 ❖ 안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행정지원과(정보화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106 / FAX : 041-840-230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 행정지원과 정보화팀 (☎ 041-840-8106)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ㄴ FAX : 041-840-2307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공주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충청남도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로 한다.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p> <p>① <u>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정보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u>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공주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u></p> <p>③ <u>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u> <u>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u> <u>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u> <u>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u> <u>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u> <u>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u> <u>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u> <u>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u> <u>9. 재원의 조달 및 운용</u> <u>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p><삭 제></p>

④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공주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주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주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3. (생략)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충청남도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공주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12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

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삭 제>

<삭 제>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
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
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
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
로 정한다.

공주시 공고 제2019 - 255호

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도로명의 변경에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19. 2. 15.(금) ~ 2. 28.(목)
2. 공고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 시군구보, 게시판 및 읍면동 게시판
3. 공고내용 : 도로명 변경조서 (별첨)
4. 의견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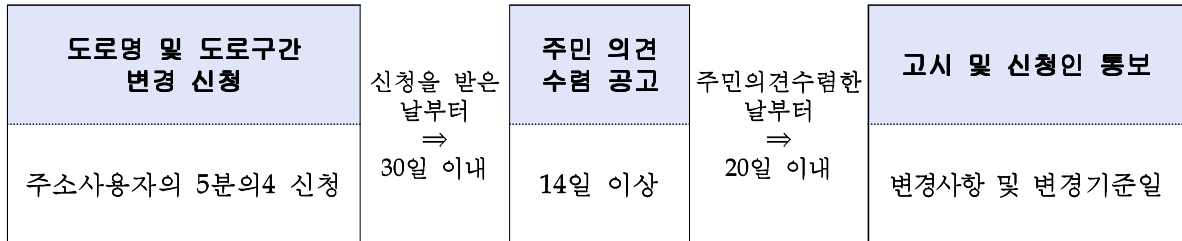
도로명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제출기간 및 장소

- 가. 기 간 : 2019. 2. 15.(금) ~ 2. 28.(목)
- 나. 방 법 : 직접방문, 우편제출
- 다. 장 소 :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6.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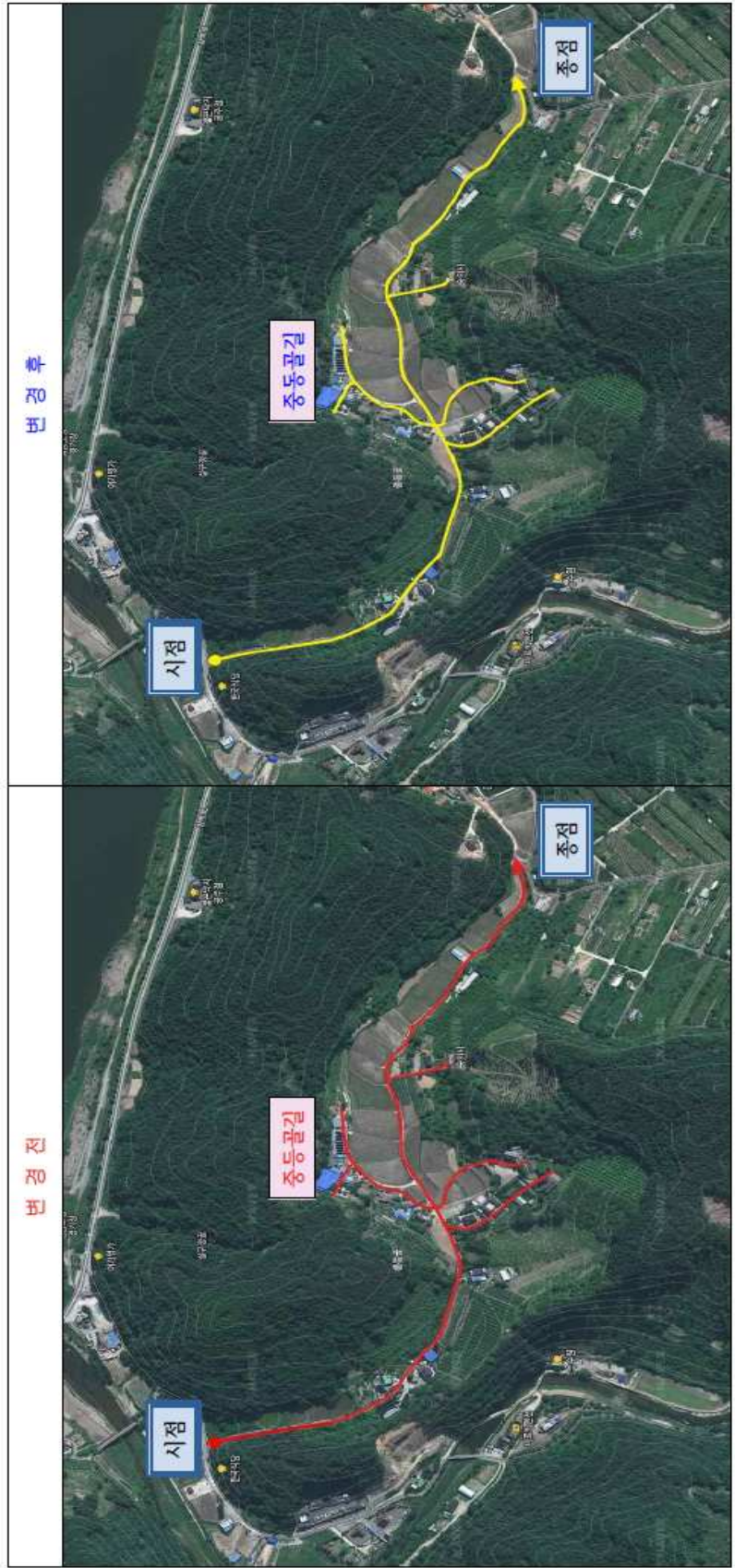
※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도로명주소법 제8조6항에 의해 주소사용자의 4/5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신청한 경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1-840-84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행 구	도로명		위계	기초 간격 (m)	폭 (m)	길이 (m)	중심선	도로구간		기초번호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예비도로명)						기점	종점	시작	끝	
상왕동	중동골길	중동골길	길	20	4	1168	도면 참조	상왕동 815-1	상왕동 284	1	118	예부터 마을 주민들이 불합당한 자연부락 명칭 활용



공인 폐기 및 신조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신조,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1. 공인 폐기 및 신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팀) 명칭 변경
2. 공인 폐기 및 신조일 : 2019. 2. 15.
3. 폐기 및 신조 공인 내역

부서명	구 분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문화재과	폐기	공주시 문화재과 수입금출납원인 유산관리	목재 1.8×1.8 훈민정음체		
	신조	공주시 문화재과 수입금출납원인 사적지관리	목재 1.8×1.8 훈민정음체		

공주시 공고 제2019-269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약서에 따라, 공주한옥마을의 관내시민 및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지자체(부여군, 청양군)주민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제6조 관련)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 「공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사람.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휴양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공주시 휴양사업소 한옥마을팀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관광단지길12(웅진동) / 우편번호: 32535
전화: 041-840-8902 / 팩스: 041-881-9172

다.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공주시 휴양사업소 한옥마을팀 (☎ 041-840-8902)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관광단지길 12(웅진동) (우편번호 32535)

↳ FAX : 041-881-9172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제6조 관련)

구 분	감 면 율	
	단 체 숙박동	개 별 숙박동
1. 공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0퍼센트	20퍼센트
2. 수학 여행단 (기준정원 30명 이상)	20퍼센트	
3.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준정원 30명 이상)	20퍼센트	
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20퍼센트	20퍼센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 ~ 3급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0퍼센트	20퍼센트
6.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퍼센트	20퍼센트
7. 「공주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공주시 명예시민인 경우	20퍼센트	20퍼센트
8.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온누리공주시민으로 가입된 사람 중 온누리공주시민증을 제시한 경우	20퍼센트	20퍼센트
9. 「백제생활권 관광시설 공동이용사업 협약서」에 의하여 부여군·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20퍼센트	20퍼센트
10. 「공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퍼센트	20퍼센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신풍배수지 신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신풍배수지 신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관계 도서를 공람·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15.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산33-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 2) 명 칭 : 신풍 배수지 신설

다. 사업의 규모

시 설 명	등급 또는 시설세분	단 위	규 모	비 고
배수지 신설	V=2,000m ³	m ²	A =2,112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공주시장(수도과장)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19.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및 소유권 외 권리 명세서 : “붙임1”

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및 기존공공
시설 현황 : “붙임2”

아. 공람기간 : 2019. 2. 15. ~ 2019. 2. 28.(14일간)

자.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041-840-8547)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안뜸길 14 신풍면사무소(☎ 041-840-2887)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및 소유권 외 권리 명세서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 권리 명세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 권리의 내용 및 종류		
	면	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7,789	2,112					
1	신평	산정	산33-1	도	1,156	42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	신평	산정	산33-2	도	2,999	1,149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3	신평	산정	산35-1	도	1,984	7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4	신평	산정	850	도	83	1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5	신평	산정	850-1	도	1,283	629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6	신평	산정	850-2	도	284	284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서

- 해당 없음 -

【붙임 2】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및 기존 공공시설 현황

1.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현황

시설명	등급 또는 시설세분	단위	규모	비고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V=2,000m ³	m ²	A = 2,112	

2. 기존 공공시설 현황

- 해당 없음 -

공주시 공고 제 2019 - 282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12. 18. 일부개정
- 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표준안)」 시달
-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소속직원들의 요청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고 특히, 출산·육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개선
- 다. 1995. 1. 31. 조례제정 이후 지속적인 일부개정 사항만을 반영해
온 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출장, 공가 및 연가 운영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중복 규정된 부분은 조례 삭제 및 생략

- 출장, 공가, 연가일수, 연가보상비 지급, 연가일수의 공제, 연가 당겨쓰기 및 연가사용의 촉진 등
- 경조사 휴가 기간 연장(안 제15조, 안 별표 3)
 - (출산) 배우자 : 5일 → 10일
 -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5일
- 특별휴가 신설 및 변경(안 제15조)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총 5일의 모성보호 휴가
 -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 5일 이내의 유산·사산 휴가
 - 풍해·수해·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및 재해지역 자원봉사 공무원 :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
 - 장기재직 특별휴가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 10일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 15일
 -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 20일
 - 3번에 걸쳐 사용 → 4번에 걸쳐 사용
 - 자녀 군(軍) 입영에 대한 특별휴가 → 전역일 추가
 - 대규모 행사 지원근무, 자연재해·재난 관련 비상근무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연 5일 범위의 특별휴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행정지원과(교류능력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2589 / FAX : 041-840-230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 행정지원과 교류능플팀 (☎ 041-840-2589)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ㄴ FAX : 041-840-2307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주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선서문은 별표 1과 같고, 그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지정된 비밀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비밀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밀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비밀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신속·정확하고 친절하게 맡은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무원의 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휴일과 근무시간이 지난 때에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공무원 및 방호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근무 공무원(이하“겸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감독은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된 지휘·감독은 겸임기관의 장이 한다.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공무원에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겸임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파견근무 공무원(이하“파견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감독은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이 한다.

②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해직된 공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무원의 휴가

제10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1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연가의 허가) ① 연가는 반일 단위·지각·조퇴·외출로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병가일수가 연 7일 이상이 되는 날부터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 한다.

제14조(병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4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연 7일 이상이 되는 날부터는 매 회마다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본인의 결혼 등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총 5일의 모성보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5일 이내의 유산 및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휴가는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의6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생후 71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시간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1일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 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

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⑤ 영 제7조의6제7항에 따른 육아시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되,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 한 것으로 본다.

⑥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⑦ 풍해·수해·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자녀가 군(軍)에 입영하는 날과 전역하는 날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시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산정 방식을 따르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4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3. 30년 이상 : 20일

⑪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대규모 행사지원근무, 자연재해·재난 관련비상근무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5일 범위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휴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휴가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또는 시행 당시에 특별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선 서 문(제2조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임용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3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다만,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가산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관련법규 발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9375호, 2018.12.18.)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2018.12.18.)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의6(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주시 공고 제 2019-305호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구성된 보조금심의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된 공주시발전사업유치활동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 동 조례 중 출연금과 관련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행법률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주시 발전사업유치활동지원심의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등 관련조항 삭제
 - 위원회의 설치조항과 기능·구성·임기·회의·운영세칙등(제8조~제17조)삭제
- 출연금 관련 조문 제목 및 내용 삭제(제5조, 제7조)
 - 제5조 조문 제목 삭제 및 제7조 출연금 내용 삭제

3. 입법예고 기간 : 2019. 2. 15. ~ 2018. 3. 8.(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기획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기획담당관실(기관유치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840-2018 / FAX : 041-840-2306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공주시 기획담당관실 기관유치팀 (☎ 041-840-2018)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32552)

☐ FAX : 041-840-2306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발전사업이나 시설을 지역내에 유치하거나 존치하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산업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연구시설 등 사회 간접자본시설
 - 나. 공공기관과 문화, 관광, 체육시설 및 교육기관 관련 시설과 사업
 - 다. KTX 공주역세권개발·금강친환경종합개발과 관련한 시설과 사업
 - 라. 대학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 마.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으로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유치활동 등”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관·시설 등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벌이거나 기관·시설 등이 존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발전사업의 유치활동 등을 위해서 구성된 기관·사회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순수 민간단체나

조직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등(이하“기관·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 그 밖에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발전사업 유치활동 지원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할 수 있다.

제6조(유치활동 등의 계획승인 신청) 발전사업 유치활동을 위해 보조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대상사업의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을 위해 기관·단체에 행정·재정 지원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2. 01.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오거리길 2 외 1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02. 0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자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1	충청남도공주시봉황동328	충청남도 공주시 오거리길 2 (봉황동)	2019.02.01.	신축	2010.0112	지역특성 반영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중학동 132-11	충청남도 공주시 축지골길 16-5 (중학동)	2019.02.01.	신축	2010.0112	지역특성 반영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3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222-71, 222-62	충청남도 공주시 방머리길 77-16 (송선동)	2019.02.01.	신축	2010.0112	누에를 많이 치던 곳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23-7	충청남도 공주시 마을안길 4	2019.02.01.	신축	2010.0112	석남리의 주 마을안에 있는 길이라 하여 마을안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100-11, 100-14	충청남도 공주시 산제골길 54-20	2019.02.01.	신축	2010.0112	옛날부터 마을에 산제당이 있던 마을이라 하여 산제골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382-2, 382-4, 382-13, 382-28, 386-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외마루길 20	2019.02.01.	신축	2010.0112	예전에 기와집이 있었던 마을로 기와집 마을이라 한 후 뜻에서 외마루길로 부여 후 다른지명과 도로명칭을 다르게 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 첨가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7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49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괴재길 150	2019.02.01.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8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탑산리 34-3, 33-3, 34-1, 34-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검바위로 95-39	2019.02.01.	신축	2010.0112	주봉~이인 가는 길 도로 옆에 주검바위라는 유적물이 있어 유적의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창리 191-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선바위길 43	2019.02.01.	신축	2011.0506	바위가 천천히 하늘을 향해 선을 굽고 있는 선바위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394-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티길 149	2019.02.01.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127-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화랑터길 16-5	2019.02.01.	신축	2010.0112	옛날 신라 패에는 화랑이 살았다 하여 화랑터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촌리 487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30-54	2019.02.01.	신축	2010.0202	정안면의 중심이 되었던 정안리 중앙 자를 활용하여 정안중앙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462-62, 462-17	충청남도 공주시 무성산로 182-2	2019.02.01.	신축	2010.0112	신웅리를 시작으로 도천리, 내산리, 한천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끝지점이 무성산을 향한다 하여 무성산의 명칭을 활용하여 무성산로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97-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무성산로 577	2019.02.01.	신축	2010.0112	신웅리를 시작으로 도천리, 내산리, 한천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끝지점이 무성산을 향한다 하여 무성산의 명칭을 활용하여 무성산로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5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175-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무성산로 785-10	2019.02.01.	신축	2010.0112	신웅리를 시작으로 도천리, 내산리, 한천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끝지점이 무성산을 향한다 하여 무성산의 명칭을 활용하여 무성산로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68-1	충청남도 공주시 버들여울길 25-1	2019.02.01.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7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웅리 산32-29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진밭노갯길 174	2019.02.01.	신축	2010.0112	예전 이 마을에 가뭇이 자주들어 땅이 말랐다 한다. 길이라는 말이 많았다고 한다. 진밭은 마른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2. 01.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길 6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02. 0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공공주장부 주소전환 계획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변경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250-45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250-4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길 6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길 6	2019. 01.23.	관련 지번 정정	고시 후 공문 발송 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산정리 72-12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산정리 862-3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신평길 87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신평길 87	2019. 01.29.	관련 지번 정정	고시 후 공문 발송 예정
3	충청남도 공주시 태봉동 405-5	충청남도 공주시 태봉동 405-7	충청남도 공주시 강정자1길 30-1	충청남도 공주시 강정자1길 30-1	2019. 01.29.	관련 지번 정정	고시 후 공문 발송 예정
4	충청남도 공주시 태봉동 405-4	충청남도 공주시 태봉동 405-5	충청남도 공주시 강정자1길 30	충청남도 공주시 강정자1길 30	2019. 01.29.	관련 지번 정정	고시 후 공문 발송 예정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2. 01.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마을안길 4 외 3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02. 0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23-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마을안길 4	2019.0 1.22.	재건축에 의한 건물 말소
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달산리 34-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검바위로 95-39	2019.0 1.22.	재건축에 의한 건물 말소
3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28	충청남도 공주시 오거리길 2	2019.0 1.22.	재건축에 의한 건물 말소
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334-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공수원로 105-1	2019.0 1.2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5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산11-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공수원로 118-21	2019.0 1.2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323-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공수원로 120	2019.0 1.2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160-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막골길 27	2019.0 1.2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8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653-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구절산길 257	2019.0 1.2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9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291-1	충청남도 공주시 대통1길 31-1	2019.0 1.2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1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5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마방길 5-5	2019.0 1.2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1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23-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마을안길 2	2019.0 1.2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12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동 359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방죽골길 7	2019.0 1.2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13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동 223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안터길 17	2019.0 1.2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14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100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산작골길 8	2019.0 1.2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1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21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상문길 19-23	2019.0 1.2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1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591-1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상보안길 88	2019.0 1.2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17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117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새마을2길 5-13	2019.0 1.2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1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25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서모곡길 137-6	2019.0 1.2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19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87-1	충청남도 공주시 수청골길 34	2019.0 1.2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2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81-4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시장길 24-3	2019.0 1.2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2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33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숫절길 141	2019.0 1.24.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2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62-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로 123-12	2019.0 1.28.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23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산정리 286-3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심방울1길 32-39	2019.0 1.28.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2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657-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안쇠실길 3	2019.0 1.28.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2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355-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화길 4	2019.0 1.28.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2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92-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2길 97	2019.0 1.28.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2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92-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2길 95	2019.0 1.28.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28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176-2	충청남도 공주시 백미고을길 6-5	2019.0 1.28.	건물 말소
29	충청남도 공주시 태봉동 405-12	충청남도 공주시 강정자1길 32	2019.0 1.28.	2018 일제조사로 건물 폐지
3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382-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75-1	2019.0 1.29.	건물 말소
3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38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외마루길 18	2019.0 1.29.	재건축에 의한 건물 말소
3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462-1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무성산로 182-1	2019.0 1.29.	건물 말소
3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175-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무성산로 765-18	2019.0 1.29.	건물 말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02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사업명 : 유네스코빌리지
2. 사업위치 : 공주시 웅진동 653-5번지의 1필지
3. 사업주체
 - 상호 : (주)현풍건설 대표 이한직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179번길 62-8, 201호(덕명동)
4.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5. 사업규모
 - 대지면적 : 2,880m²
 - 건축규모 : 주1/부1, 지하1/지상 1~15층, 68세대
 - 주택형별 : 59.8828m²(59A형 28세대), 59.8948m²(59B형 14세대), 59.6171m²(59C형 25세대), 84.8886m²(84D형 1세대)
 - 건축면적 : 614.49m²
 - 연면적 : 5,967.3311m²
 - 사업기간 : 2016. 9. ~ 2020. 12.

6.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주체	(주)루시드 대표 구장서	(주)현풍건설 대표 이한직	공사내용 변경없음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346(산성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179번길 62-8, 201호(덕명동)	
사업기간	2016. 9. ~ 2017. 12.	2016. 9. ~ 2020. 12.	

7. 의제사항

- 건축법(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실시계획인가)
- 도로법(도로점용허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우리시 의당면 청룡리 20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부지내 『골드리버CC 대중제 9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5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체육 시설	골프장	의당면 청룡리 200 일원	175,819	증 19	175,838	2008.10.20. (공주시 제2008-67호)	

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변경 175,819 → 175,838㎡ (증 19㎡) 	- 필지 분할 및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결정(변경)도 : 【붙임 1】

2.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200번지외 16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 명 칭 : **(변경)골드리버CC 대중제 9홀 조성사업**
(당초)골드리버CC 관리동 증축 및 3번홀 코스개선사업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부지면적	사업개요
당 초	175,819㎡	코스:51,905㎡ 건축:3,601㎡ 부대시설:18,720㎡ 수림대조성:101,593㎡
변 경	175,838㎡	코스:52,323㎡ 건축:3,601㎡ 부대시설:18,743㎡ 수림대조성:101,171㎡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의 성명 : 주식회사 웅진 대표 권영기
- 시행자의 주소 :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마. 사업기간 : 인가일 ~ 2019.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2】**

사. 기타사항 : **【붙임 3】**

【붙임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200	체	73	73	73	73	(주)웅진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2		200-2	체	7	7	7	7	(주)웅진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3		201-1	체	16	16	16	16	(주)웅진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4		220-2	체	126,752	126,752	126,752	126,752	(주)웅진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합병에 의한 지번 변경
		221-2	체							
5		225	체	7,380	7,380	7,380	7,380	(주)웅진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6		225-2	체	4,559	4,559	4,559	4,559	(주)웅진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7		225-4	도	691	691	691	691	공주시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8		221-3	임	5,089	5,089	5,089	5,089	(주)웅진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9		221-4	임	5,750	5,750	5,750	5,750	(주)웅진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10		221-5	임	5,345	5,345	5,345	5,345	(주)웅진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11		221-6	임	1,595	1,595	1,595	1,595	(주)웅진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12		산43	임	16,102	14,131	16,102	14,131	(주)웅진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분할
13		225-10	임	-	1,990	-	1,990	(주)웅진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산28-1	산43에서 분할
14		684	구	3,847	3,847	1,967	1,967	국 (농수산부)		
15		685	구	1,153	1,153	450	450	국 (농수산부)		
16		699	도	543	543	42	42	국 (국토부)		
17	700	도	1,134	1,134	1	1	국 (국토부)			
합계				180,036	180,055	175,819	175,838			

기 타 사 항

1. 조성계획(변경)

구 분	시설내역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5,819	-	175,838	
1.코스시설			51,905	418	52,323	
티	15개소	15개소	916	39	955	
그린	9개소	9개소	4,366	감) 743	3,623	5,6번홀 코스 개선
페어웨이	9개소	9개소	23,903	1,387	25,290	5,6번홀 코스 개선
리프	8개소	8개소	21,632	감) 1,158	20,474	5,6번홀 코스 개선
벙커	5개소	5개소	372	893	1,265	5,6번홀 코스 개선
퍼팅그린	1개소	1개소	716	-	716	
2.건축시설			3,601	-	3,601	
클럽하우스	1개동	1개동	2,090	-	2,090	
휴게소	1개동	1개동	405	-	405	
관리1동	1개동	1개동	790	-	790	
관리2동	1개동	1개동	316	-	316	
3.부대시설			18,720	23	18,743	
주차장	100대	100대	3,253	-	3,253	
부지내진입도로	L=170m	L=170m	1,412	-	1,412	
카트도로	L=2,408m	L=2,608m	7,550	23	7,573	
관리도로	L=167m	L=167m	691	-	691	
재해용저류지	5개소	5개소	5,024	-	5,024	
초기우수저류지	3개소	3개소	790	-	790	
물탱크	1개소(지하)	1개소(지하)	-	-	-	
오수처리장	1개소(지하)	1개소(지하)	-	-	-	
4.수립대조성			101,593	감)422	101,171	
완충용녹지	-		69,702	188	69,890	안전망설치
원지형녹지	-		31,891	감) 610	31,281	

2. 조성계획도(변경)

조성계획도(기정)



조성계획도(변경)



공주 도시관리계획(도로 : 대로2-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하고 관계도서를 공주시 도시정책과(☎041-840-856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2. 15.

공 주 시 장

1.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2. 공주시 도시리계획(도로)에 대한 결정도(1/5,000) : 게재생략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61)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	30~36	주간선	3,218	6호광장	월송동 지구계	일반 도로	-	'85.12.28	
변경	대로	2	1	30~36	주간선	3,218	6호광장	월송동 지구계	일반 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1	대로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변경없음) - 당초 : 3,218 m ◦ 폭원 (일부변경) - 폭원 = 30~36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로2-1호선 기 개설된 도로현황과 도시계획을 일치 시키기 위해 경미한 변경 코자 함.

공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도

